

Ⅲ-2 이사와 귀국

1. 이전 거주지에서의 수속

임대주택의 경우 수도, 가스, 전기대금의 정산을 진행합니다. 이사전에 전화로 각각 영업소에 이사할 뜻을 연락하고 그들이 정산을 위해 찾아오도록 합니다. 전화도 마찬가지로 이사의 뜻을 전하여 새로운 주소지를 연락합니다. (116 번). 또 우편국에 이전신청을 하면 이후 1년간은 새로운 이전지에 우편물이 무료로 전송됩니다.

또 이전지가 현재 거주하는 시정촌과 다른 경우 시정촌사무소의 국민건강보험계에 「자격상실신청」을 내어 보험증을 반납합니다.

2.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를 마치면

가스, 전기회사에 연락합니다. 가스는 가스회사에서 개통을 위해 담당자가 파견되기때문에 입회하여주십시오. 전기는 일반적으로 브레이크를 올리면 임시로 사용할 수 있게 되지만 사용을 시작하면 전기회사에 될수록 빨리 연락해 주십시오. 수도는 아파트에 따라 다르기때문에 집주인에게 확인하여주십시오.

또한 이사후 14일안으로 새 주소지의 시구정촌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의 주소변경을 진행하여주십시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있는 경우 전거신청을 한 다음 새로운 주소지에서 가입해주시요.

운전면허증을 가지고있으면 경찰서에서 주소변경을 진행해주시요.

3. 귀국을 할 경우

①임대주택에 관한 정산을 합니다. 가스, 전기, 수도 및 국내, 국제전화요금의 정산을 완료해주시요.

②년도도중에 귀국하는 경우는 세금의 정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주민세에 관해서는 시구정촌사무소에서 그 년도분을 지불하여주시요. 지방세는 전년도 소득을 기반으로 하여 계산되어 있으므로 그 해 1년간 일본에 거주를 안해도 전액 지불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소득세에 관해서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세무소에 신청함으로써 확정신고의 시기에 소득세의 환부를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임시적인 확정신고를 진행하여 그 해 소득세의 미납분을 일본을 떠나기 전에 전액 정산합니다.

④국민건강보험은 귀국 한달전정도에 시구정촌사무소에서 보험료의 청산과 탈퇴의 수속을 진행해주시요.

⑤연금에 가입하고있었다라면 탈퇴일시금을 귀국후에 청구할수 있습니다. 사회보험사무소 혹은 근무처에서 신청용지를 받아놓아주시요.

⑥외국인등록증은 출국시에 입국심사관에게 반납해주시요.